

클로비스 시
상수도 서비스 중단 방침
2020년 2월 1일

I. 주민 상수도 서비스 중단 방침의 목적

이 문서는 클로비스 시(이하 "시")의 주민용 상수도 서비스 중단 방침(이하 "방침")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방침은 주민용 상수도 서비스의 중단에 관련되는 시의 결정을 규율하는 원칙과 목적을 정합니다. 본 방침의 주 목적: 상수도 서비스 중단에 대한 기간 설정, 고지 요건 확인, 단수를 피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납부 약정 옵션, 고객이 납부 고지에 대해 이의나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절차 수립, 재연결 수수료 예외 설정, 세입자/점유자에 대한 고지 요건 확인.

이 방침은 캘리포니아 보건안전법 116900-116926 섹션과 시의 조례 6.5.101-6.5.112 섹션에 따라 제정되었습니다. 이 방침은 음용수 서비스에만 적용되며, 상용수 서비스나 시가 제공하는 다른 서비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II. 표준 중단 기간

서비스에 대한 납부금을 고지서에서 지정한 납부일까지 내지 않으면 계정에 연체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연체가 60일 간 지속되면 고객에 대한 서비스가 중단됩니다. 고객은 미납으로 인한 중단 발생일로부터 최소한 7일 전에 중단이 임박했음을 서면 고지를 통해 통지받아야 합니다. 고지서는 주민 서비스가 제공되는 거주지로 우편 발송됩니다. 계정보유자가 서비스가 제공되는 거주지에 살고 있지 않을 경우, 고지서는 계정보유자의 청구지 주소로도 발송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서비스가 제공되는 거주지에 우편으로 발송되는 고지서에는 "점유자"를 수신인으로 기재합니다. 고객은 시의 재무부에 (559) 324-2130(업무시간: 월요일-금요일 오전 8시-오후 4:30)으로 연락하여 자신의 계정 상태와 서비스 중단을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상담할 수 있습니다.

미납으로 고객의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시는 고객에게 해당 거주지에서 서비스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시가 정기적으로 정하고 있는 단수일의 오전 8시 현재 해당 수도는 "단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III. 서면 고지

이 방침에 따른 모든 고지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됩니다.

클로비스 시
상수도 서비스 중단 방침
2020년 2월 1일

- 고객 성명 및 주소
- 체납액
- 거주용 서비스 중단을 피하기 위해 납부 또는 납부 약정이 요구되는 마감일
- 체납 요금을 지급하기 위한 시간 연장을 신청하는 절차 (IV 섹션 참조)
- 고객이 납부 유예 또는 납부 약정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 (IV 섹션 참조)
- 납부 고지서 심의 신청 및 이의신청에 대한 절차 (V 섹션 참조)

IV. 납부 유예 및 기타 납부 약정

고객이 예정된 주거용 상수도 서비스 납부를 하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고객은 납부 유예를 요청하거나 납부 약정 설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클로비스 시는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납부 유예 - 고객은 12개월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납부고지서 미결제액 전부에 대해서 1회의 유예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 약정 - 고객은 12개월을 넘지 않는 기간에 걸쳐서 납부고지서 미결제액을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납부 약정은 주간 단위, 격주 단위, 월 단위로 분할 납부하게 됩니다.

이러한 선택의 기회는 고객이 12개월 동안 1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시가 정한 양식을 작성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납부 유예나 납부 약정으로 특정 납부 주기의 금액을 납부할 때, 고객은 약정금액 납부와 현행 서비스 모두에서 연체가 없어야 합니다.

고객이 위에서 설명한 유예 납부나 납부 약정에 대해서 60일을 지연하거나 현재의 서비스 납부를 60일 지연할 경우, 주거용 상수도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중단이 임박한 경우, 방침 섹션 II항과 III항에 따라 고객에게 통지를 합니다.

V. 이의신청

납부고지서나 주거용 상수도 서비스의 중단 고지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 서면으로 작성하여 다음의 주소지로 보내야 합니다 — City

클로비스 시
상수도 서비스 중단 방침
2020년 2월 1일

Clerk at 1033 Fifth Street, Clovis, CA 93612. 납부고지서에 대한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을 하고 있는 해당 고지서의 납부마감일보다 늦지 않게 접수되어야 합니다. 주거용 상수도 서비스 중단에 대한 이의신청은 단수일 5일 전보다 늦지 않게 접수되어야 합니다. 이의신청의 범위는 기한이 된 특정 납부고지서나 서비스 중단 고지서로 한정됩니다.

클로비스 시 담당공무원은 이의신청서를 검토한 후 고객에게 연락하여 그 이의신청에 대한 모든 상황에 대해 논의합니다. 모든 사실관계와 상황에 대해 논의한 후, 시의 결정이 내려지며, 그 결정은 고객에게 전달됩니다. 이의신청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는 상수도 서비스의 중단은 집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지서에 대한 조정으로 금액이 감소되거나 증가될 수 있으며, 청구 주기에 따라 납기가 되는 모든 금액은 이의신청 절차 종료 시 즉시 납기가 되거나, 양당사자가 동의한 경우, 대체 납부 약정 조건이 적용됩니다.

VI. 재연결 서비스 수수료

재연결 서비스 수수료는 계속해서 클로비스 시 조례 6.5.107 섹션의 적용을 받습니다.

VII. 개별적 계량이 측정되는 주거지의 세입자/점유자

개별적으로 계량이 측정되는 주거지 소유자가 기록상 고객으로 되는 상황에서, 상수도 서비스 납부가 연체되어 상수도 서비스 단수로부터 최소한 10일 전의 차단 적용을 받을 경우, 시는 합리적이고 신의성실에 따른 노력을 통해 세입자/점유자에게 서면으로 알려드립니다. 고지문에서, 세입자/점유자가 해당 주소지에서의 상수도 서비스에 대한 후속 요금을 재정적으로 부담할 의사가 있는 한, 세입자/점유자에게는 연체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 없이 시의 고객이 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러한 약정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세입자/점유자가 임대차계약서(임대차 당사자들의 서명이 있을 것) 형식으로 임대차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